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고 건설기계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이후 기한내 수출이행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이행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 전국번호표 도입으로 소유자의 주소지가 시·도간 변경이 있어도 번호표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시·도내 변경과 시·도간 변경을 구분하여 행정절차를 다르게 하던 것을 일원화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출이행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는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하도록 규정(안 별표3)나. 전국번호표 시행으로 시·도간 이동시에도 등록 번호표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등록이전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내 이동과 동일하게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행정절차 일원화(현행 제6조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제6조에 따른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시·도 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 표 중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3) 신고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1호	10만원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00만원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지역명이 있는 번

는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6조(등록이전)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시·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주소의 정정신고

2.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도지사가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검사기록부를 확인하여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 제작자로부터 등록번호표를 교부받아 이를 부착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3537